

용인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

제정 2000. 7. 18 규칙 제235호
개정 2005. 10. 5 규칙 제468호
2010. 7. 14 규칙 제607호
일부개정 2018. 4. 12 규칙 제911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5. 10. 5, 2018. 4. 12>

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소년”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.
2. “청소년유해환경”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, 청소년유해약물등,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·학대를 말한다.

[전문개정 2018. 4. 12]

제3조(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)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. 다만, 신고자가 1회 2건 이상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 지급액이 높은 1건에 대하여만 지급한다. <단서신설 2010. 7. 14, 개정 2018. 4. 12>

제4조(신고방법)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, 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8. 4. 12>

1. 신고인의 성명, 주소와 전화번호
2. 피신고인의 성명,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
3.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
4.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·보존하여야 하며,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8. 4. 12>

제5조(홍보)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,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.
<개정 2005. 10. 5>

제6조(포상금 지급대상)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,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, 과징금부과 등 「청소년 보호법」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. 다만,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.
<개정 2018. 4. 12>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0. 7. 14, 2018. 4. 12>

1.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
2.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, 공익근무자,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
3.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용인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
4. 1인이 월2회를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

제7조(포상금예산의 확보) 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.

② 포상금지급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편성·확보하고, 추경예산이 확보되기 전의 포상금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확보된 후에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 10. 5>

제8조(포상금의 지급)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,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. <개정 2018. 4. 12>

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,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8.

4. 12>

제9조(환수)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·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. <개정 2018. 4. 12>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5. 10. 5 규칙 제468호>

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0. 7. 14 규칙 제607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4. 12 규칙 제911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<개정 2018. 4. 12>

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

위 반 행 위	지급액
1. 판매금지 가. 「청소년 보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·대여·배포·시청·관람·이용 금지를 위반한 행위	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 업자 5만원
2. 외국 매체물에 대한 특례 가. 법 제22조에 따른 외국 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	10만원
3. 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가.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제23조제4호가목(4)의 환각물질 또는 (5)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·대여·배포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	5만원
나.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·담배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	5만원
4. 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가.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	20만원
나.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	10만원
5. 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가. 법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·매개하는 행위	20만원
나. 법 제30조제2호의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接客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·매개하는 행위	20만원
다.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	20만원
라.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	10만원
마.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	10만원
바.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	10만원
사.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	10만원
아.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	10만원
자.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·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	10만원
6. 그 밖에 법을 위반하는 행위	5만원

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18. 4. 12>

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 접수대장

번호	신고 일자	신 고 인				신 고 내 용			처리 결과
		성명	생년월일	주 소	전화번호	업소명 (업주명)	위 치 (주소)	위 반 행 위	

[별지 제2호서식] <개정 2018. 4. 12>

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신청서				
신 청 인	성 명		생년월일	
	주 소	(전화:)		
	거 래 은 행		계좌번호	
신고사항	신 고 일	년 월 일 시 분		
	신 고 기 관			
	피 신고인	업소명(업주명)		
		위 치(주 소)		
	신 고 내 용			
<p>위와 같이 「청소년 보호법」 위반자를 신고하고,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 신청인 : (인)</p> <p>용 인 시 장 귀하</p>				
※구비서류 : 다른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				